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코스닥벤처 공모주 리츠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- **변경 사유** : ①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③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
 ④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3. 6. 2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	9.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(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<u>2022</u>년 12 월 31 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한함) 10.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투자 및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	9.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(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<u>2025</u>년 12 월 31 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한함) 10.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투자 및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



	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 년 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투자하여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 시에는 세제혜택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u>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제 1 항제 5 호, 같은 조 제 2 항제 4 호 제 6 호나목, 같은 조 제 8 항 제 9 항에 따른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관한 적용기한은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짐〉</u>	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 년 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투자하여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 시에는 세제혜택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u>〈삭 제〉</u>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13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	13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

		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	설정 6개월 경과에 따른 삭제	14.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1개월 이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“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 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단,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의 세제혜택은 적용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	<u>〈삭 제〉</u>
	번호 정정	15. (생 략)	14. (현행과 같음)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2022. 3. 31. 기준 -	2023. 4. 28. 기준 2023. 5. 9. 기준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2023. 5. 9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2. 4. 30. 기준	2023. 4. 30. 기준


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세제혜택 관련위험 : (생략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 처리방안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.	세제혜택 관련위험 : (생략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 처리방안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

	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	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미적용 위험 : 이 투 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'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'벤처기업투 자신탁'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의 30%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투자 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벤처 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 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 을 받을 수 없으며, 이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	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미적용 위험 : 이 투 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'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'벤처기업투 자신탁'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의 25%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투자 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벤처 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 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 을 받을 수 없으며, 이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매입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2(3)영업일 기준가격 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제 4(4)영업일에 지급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2(3)영업일 기준가격 으로 4(4)영업일에 지급
과세	중복기재 삭제	계약기간 : 3 년 이상 (조 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벤처 기업투자신탁의 적용기한 은 2023.12.31.까지이며, 2022.12.31.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대금 결 제분(매수대금 납입일 기 준이 아님)에 한하여 소득 공제가 적용 되고 2022.12.31. 경과 후 가 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미적용))	계약기간 : 3 년 이상 (삭 제)

	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	세제혜택 :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 투자(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액(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)에 대해 투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(거주자 1인당 300만원 한도) * 300만원 =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(3천만원) × 소득공제율(10%)	세제혜택 :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투자(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액(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)에 대해 투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(거주자 1인당 300만원 한도) * 300만원 =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(3천만원) × 소득공제율(10%)
--	------------------	--	--
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〈신 설〉	<u>2021.5.7 일괄신고서 효력 발생</u> <u>2021.5.10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
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	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4. 30.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1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	<u>〈삭 제〉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1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
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) ① ~ ⑤ (생략) 다) ~ 라) (생략) 〈신설〉	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다) ~ 라) (현행과 같음) 증권거래대차 목적 등 기재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,6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〈삭제〉 〈삭제〉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,6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
		① ~ ⑤ (생략) 나) (생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세제혜택 관련위험 : (생략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 처리 방안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.	세제혜택 관련위험 : (생략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 처리 방안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
	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미적용 위험 :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'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'벤처기업투자신탁'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의 30%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이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인	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미적용 위험 :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'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'벤처기업투자신탁'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코스닥 공모주의 25%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이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인

		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	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	<u>증권대여위험 및 증권차입 위험 기재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제한 삭제	3) <u>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</u> <u>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.</u>	〈삭 제〉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4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<u>2(3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2(3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(4)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22. 3. 31. 기준</u> -	<u>2023. 4. 28. 기준</u> <u>2023. 5. 9. 기준</u>

	중복 기재 삭제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총 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.	《삭 제》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 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증권거래비용 내역, 증권거 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등 기재 금융비용 내역 기재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중복 기재 삭제	계약기간 : 3 년 이상 (조 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벤처 기업투자신탁의 적용기한 은 2023.12.31.까지이며, 2022.12.31.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대금 결 제분(매수대금 납입일 기 준이 아님)에 한하여 소득 공제가 적용 되고 2022.12.31. 경과 후 가 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미적용))	계약기간 : 3 년 이상 《삭 제》
	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	세제혜택 : 소득세법상 거 주자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(투자신탁 수 익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 액(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)에 대해 투 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(거 주자 1 인당 300 만원 한 도) * 300 만원 =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	세제혜택 : 소득세법상 거 주자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(투자신탁 수 익증권 매수일 기준)한 금 액(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)에 대해 투 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(거 주자 1 인당 300 만원 한 도) * 300 만원 =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금
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액 한도(3 천만원) × 소득공제율(10%) ※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(소규모 펀드), 소규모 펀드 처리 방안,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 등에 따라 상기의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액 한도(3 천만원) × 소득공제율(10%) ※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(소규모 펀드), 소규모 펀드 처리 방안,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 등에 따라 상기의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u>〈삭 제〉</u>
	설정 후 6 개월 경과에 따른 삭제	※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“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기의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	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5. 9. 기준</u>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<u>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내역</u> <u>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〉</u> <u>〈주식의 매매회전율〉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5. 9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5. 9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4. 30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3 기(2020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 31)</u>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 12. 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4. 30.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업무 (생 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(생략) (3) 이 투자신탁을 최초설정일로부터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1 개월 이내 이내 “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혼합]”의 자투자신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(현행과 같음) <u>〈삭 제〉</u>
	설정 후 6 개월 경과에 따른 삭제		

		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14 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
	번호 정정	(4) (생 략)	(3) (생 략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①(생 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~ ⑦ (생 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	(2) 수시공시 ①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

		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 략)	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